개선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중국은행 서울지점

2. 조치일 : 2022. 6. 13.

3. 조치내용

대 상	내 용
기 관	개선사항 1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개선사항

(1) 의심거래 보고업무 관련 재검토 운영절차 미흡

영업점 보고담당자가 의심거래 추출기준에 따라 의심거래 점검 대상으로 추출(Alert)된 거래를 최초 검토하면서, 고객확인 재수행 및 추후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의심거래 보고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결정한 건이 ◎건 있으나,

최초 검토 이후 재검토 업무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아 재검토 등을 적절히 수행하였는지가 확인·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

재검토 결정 건에 대하여 의심거래 보고여부를 재검토하는 과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및 관리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